

행정기획위원회
소관

성북의 미래, 현장에서 답을 찾다!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세 무 1 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.11. .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전자고지 등에 관한 지원제도인 마일리지 적립이 폐지됨에 따라 전자
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
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 제1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2. 9. 29. ~ 2022. 10. 19. (20일간)
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2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첨
- 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 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250원”을 “8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600원”을 “1,6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다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<u>250원</u>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<u>600원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800원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1,600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‘21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현황은 6,515건 187만원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연 540여만 원으로 추계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이경호

【관계법령】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송달 방식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이체 방식”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